

공사 및 용역(기술) 계약 세부기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 이라 한다)은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의 공사 및 용역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업무능률을 제고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사 및 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과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부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①이 세부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 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2. “용역” 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기법” 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학문분야의 기초와 응용과학에 관한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부서” 라 함은 공사 및 용역계약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시공부서” 라 함은 공사 및 용역에 관한 계획의 수립·공정관리·감독업무와 설계발주, 공사시공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시설물관리부서” 라 함은 시설물의 유지·관리·보수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②이 세부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계약관계법령, 계약사무규칙(이하 “사무규칙” 이라 한다), 계약예규, 건설공사 관계법령, 기술용역 관계법령 등에 따른다.

제4조(건설공사와 설비자재의 분리발주) 계약부서의 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수의계약 또는 중소기업간 경쟁품목 중 발주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인 설비자재는 공사와 분리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산계약 및 설계시공·일괄입찰의 경우
2. 개별품목(조합을 달리하는 품목)당 가격이 1천만원미만의 경우
3. 해당 중소기업제품의 품질, 성능, 규격 등이 당해시설물의 목적실현에 지장을 주는 경우

제5조(관급자재 공급) 공사용 자재는 계약상대자가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재의 품질, 수급상황 및 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사가 직접 공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는 공사가 이를 구매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제6조(설비 및 관급자재의 구매) 계약부서의 장은 설비 및 사급자재가 포함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자재를 구매하는 부서의 장에게 구매요청을 하여야 하며, 자재구매부서의 장은 동 자재를 공사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구매하여야 한다.

제7조(설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①시공부서의 장은 건기법시행령 제38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부실설계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설계자문위원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당해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제8조(기술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시공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할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사의 설계에 필요한 사전조사 사항 및 종합계획의 적정성
2. 설계 및 시공기준의 기술적 타당성
3. 건설재료 선정의 적합성
4. 구조 및 설비의 규모, 형식 배치계획의 적정성
5. 공법 채택의 타당성
6.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시방내용의 적합성
7. 공정계획의 적정성
8. 일괄입찰 또는 실시설계·시공입찰을 위한 설계지침의 적정성
9. 일괄입찰시 실시설계 적격자가 제출한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

제8조1(재계약 평가위원회 설치운영) ①시공부서 및 용역부서의 장은 재계약시 다음 각호의 심의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1차 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7.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 전문·설비공사 등은 1억원)미만인 공사
2. 제1차 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6.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10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 전문·설비공사 등은 1억원)이상인 공사
3.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8.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
4. 제1차용역의 낙찰율이 100분의 84.995이상의 경우로서 2억원 이상의용역

②1항의 평가결과는 외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회 심의위원 및 ①항 각호의 심의 세부사항은 사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9조(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방법 결정) ①시공부서의 장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공사에 대하여는 기본설계전에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 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건설기술의 공모) ①시공부서의 장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상징성·기념성·예술성·창의성과 새로운 기술 또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용역사업에 대하여 건설기술 공모를 할 수 있다.
② 건설기술공모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1조(공사대장 관리 등) ①시공부서의 장은 공사의 주요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계약부서의 장은 공사계약 관련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계약대장에, 하도급계약(변경) 관련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하도급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집행계획 및 공사집행실적 제출) 각 본부는 당해 회계년도 개시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사집행계획을, 당해 회계년도 종료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사집행실적을, 매 분기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사별 집행실적을 본사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공 사 계 약

제1절 설계도서 작성

제13조(사전조사) ①시공부서의 장은 건설공사에 대한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공사의 설계에 필요한 충분한 사전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계약에 따라 조사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전조사에서는 건설재료 및 자재 등의 선정시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시공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설계시 구조물의 형식, 기능 및 규모에 따라 구조 및 수리계산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계약에 의하여 구조 및 수리계산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설계도서 작성) 시공부서의 장은 공사의 발주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다음

각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질관리를 고려한 설계
2. 안전을 고려한 설계
3. 시설물관리의 편리를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
4. 신기술 및 신공법의 도입
5. 자재의 국산화, KS제품 및 우량자재의 우선 사용

제15조(설계도서 내용) ①설계도서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조사 내용과 표준 품셈, 설계기준 등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설계도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1. 목차
2. 설계설명서
3. 일반시방서
4. 특별시방서
5. 예정공정표
6. 산출내역서
7. 원가계산서
8. 일위대가표
9. 단가산출서
10. 수량계산서
11. 도면

제16조(시방서의 내용) ①제15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시방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 건기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설계·시공기준 등과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2.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시설 및 인력에 관한 사항
3. 감독자 및 계약상대자를 위한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소, 화장실 등 가설비의 설치규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사보험 등 보험의 부보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의 종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보건에 관한 사항
6.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건설폐자재의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를 포함)등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기술도서, KS규격집 등의 현장비치에 관한 사항
8. 사진의 촬영(VTR제작을 포함)및 제출에 관한 사항
9. 공사의 시공 전과정은 물론 특히 시공중에 발생한 문제점, 실패사례, 신공 법 등의 주요시공내용을 기록한 공사시공기록 책자, 준공도면 등 성과품 제출과

컴퓨터용 디스크에 수록하여 제출할 내용에 관한 사항

10. 시설물 작동, 유지보수 지침서 제출에 관한 사항
11.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 하천, 기타 재산을 훼손하거나 지장물 철거에 따른 보상 및 보수에 관한 사항
12. 착공 및 준공시 각종 표지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13. 일일작업보고 및 공정실적보고 등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14. 설계도서의 관리등 보안에 관한 사항
15. 설계도서의 사전 검토와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16. 현장대리인 등의 관리, 교체에 관한 사항
17. 공사시행과 관련한 각종 통보, 지시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18. 지하매설물의 종류 및 시공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
19. 기타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제1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방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 공종별 작업방법의 선정 및 시공시 특별히 준수하여야 할 사항
2. 자재의 품질기준, 규격, 재질, 검사 및 시험방법
3. 공사 품질 기준과 검사 또는 시험방법
4. 공종별 목적물의 수량산출 방법
5. 공종별 목적물 수량에 대한 단가산출, 대가지급에 관한 사항
6. 공사진행단계별로 작성되어야 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 및 작성기준
7. 건기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태를 확인받아야 할 대상공종의 확인 절차 및 방법
8. 기타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사항

제2절 입찰공고 등

제17조(입찰 및 계약서류) 시공부서의 장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공사의 입찰)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고 계약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심의결과 사본을 포함한다.

제18조(입찰공고) 계약부서의 장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입찰참가신청) 계약부서의 장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제20조(현장설명 등) ①시공부서의 장은 현장설명이 필요한 경우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현장설명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의2(공사의 현장설명)에

따라 시공부서의 장의 책임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공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설명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현장설명자로 지정받은 자는 현장설명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③국가계약법시행령 제19조(부대입찰)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계약부서의 장은 현장설명에 입회하여 현장설명에 참여한 해당기술자의 자격 유무를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현장설명청취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산출내역서 작성)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공사의 입찰) 제6항에 따른다.

제22조(서류제출 마감기한) 입찰공고 및 입찰참가통지서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한을 정한 경우 전일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전일을 기한으로 본다.

제23조(원가계산서 작성) 시공부서의 장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따른다.

제24조(예정가격조서 작성) 계약부서의 장은 시공부서의 장이 제출한 설계도서 중 원가계산서 항목의 적정여부를 검토·조정하여 별지 제9호 및 제10호 서식의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5조(예정가격 작성) 계약부서의 장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조서를 기초로 하여 예정가격의 결정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6조(복수예비가격의 작성) 복수예비가격 결정자는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경우,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조서를 기초로 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복수예비가격을 결정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7조(확정예정가격의 작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확정예정가격을 결정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확정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8조(수의계약의 예정가격 작성)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조서를 기초로 별지 제14호 서식의 수의계약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9조(우편 등 입찰서의 제출) 계약부서의 장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2항에 따르며 별지 제16호서식의 우편입찰서 접수대장 기록한다.

제30조(입찰서 제출 시 감사인 입회 등)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을 실시 하지 않는 경우 계약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하여 감사기준 시행세칙 제3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실에 이를 통보한 후, 감사인

의 입회하에 입찰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하고 별지 제18호 서식의 입찰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계약부서의 장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업체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수의견적서를 제출하게 하고, 별지 제20호서식의 견적조서를 작성한다.

제31조(산출내역서 확인 등) ①계약부서의 장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내역입찰 대상공사의 경우, 산출내역서와 함께 시공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시공부서의 장은 검토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작성) 시공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가 필요한 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3조의2의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적격심사세부기준 작성) ①계약부서의 장은 적격심사대상 공사의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한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계약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기준 중 일부 항목의 심사를 시공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적격심사기준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3절 계약체결

제34조(계약서의 작성) ①계약부서의 장은 낙찰자 결정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임하여 별지 제21호 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입찰유의서, 입찰특별유의서
2.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3. 산출내역서(장기계속공사의 제1차년도 경우에는 총공사 산출내역서를 포함)
4.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원도 및 원본 각 1부에 시공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자와 계약상대자 또는 당해 공사의 현장대리인이 각각 기명·날인 후 시공부서에서 별도 보관)
5. 현장설명을 실시한 공사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서
8.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
9.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고시 부대입찰 집행기준 제4조 각호의 사항
10. 국가계약법 제6장의 규정에 따른 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안내서(일괄입찰 등의 경우에 한함)

②계약부서의 장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당해공사 면허수첩 사본
3.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4.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 납부각서(별지 제22호서식)
5.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수입인지
6.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종 국민 주택채권 매입필증(다만,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계약금액을 기준)

③계약부서의 장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으로부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한다.

제35조(공사계약 변경) ①계약부서의 장은 공사계약금등 공사계약을 변경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변경공사도급계약서에 서명날인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부서의 장은 변경공사계약금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되는 경우는 연대보증인으로부터 별지 제24호서식의 계약변경동의서를 제출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지수조정율의 산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율의 산출은 계약예규 지수조정률 산출요령에 따르며, 동 요령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설계변경으로 인한 신규비목이 있을 경우에는 비목지수의 기준시점은 계약 변경일로 하고 비교시점은 기존 비목지수의 비교시점과 동일하게 한다.
2.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신규비목의 지수는 기준시점으로 부터 비교시점까지 6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지수조정율이 5%미만인 경우에도 이를 산출한다.
3. 기존비목에 대한 지수조정율(K_1)과 신규비목에 대한 지수조정율(K_2)이 각각 산출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지수조정율(K)을 산출한다. 단, 산신중 잔여순공사비란 순공사비에서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 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text{지수조정율}(K) = \frac{(\text{조정기준일 이후 기존비목잔여순공사비} \times \text{기존비목지수조정율}) + (\text{조정기준일 이후 잔여순공사비})}{(\text{조정기준일 이후 신규비목잔여순공사비} \times \text{신규비목지수조정율}) + (\text{조정기준일 이후 잔여순공사비})}$$

제4절 공사관리

제37조(공사의 착공) ①계약부서의 장은 계약체결 후 시공부서의 장에게 계약체결 내용을 통보하고, 시공부서의 장은 공사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별지 제25호 서식의 착공계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 후 착공을 승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계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체공사 및 당해년도 공사의 세부공정계획서(인력, 자재, 장비수급계획서 포함)
2. 현장대리인계(별지 제26호 서식)
3. 다음 각목의 사항이 첨부된 현장조직표
 - 가.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별지 제27호서식)
 - 나. 안전관리자 선임계(별지 제28호서식)
4. 건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서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계획서(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5. 건기법시행령 제46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3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6.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가입증서
7. 시공에 따른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계획서
8. 물가상승 지수산출을 위한 비목내역서(적산관리시스템용 전산 디스켓)

제38조(보안관리) 계약부서의 장과 시공부서의 장은 공사계약기간 동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 공사의 비밀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시공업체 대표, 현장대리인, 상당기간 공사참여자에 대한 신분확인
2. 공사전체의 현황파악을 막기 위한 공사참여자의 공정별 차단 대책 강구
3. 별지 제29호서식의 공사(용역)참여자 서약서를 붙임한 별지 제30호서식의 대표자보안각서 징구
4. 공사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5. 도면, 시방서 등의 생산·회수·파기에 관한 기록 유지
6. 주요 시공자료의 관리(열람,복사,복제 등) 방안 마련

제39조(착공후 조치) ①시공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에게 착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공관리대장을 건기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시공부서의 장은 착공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관련법규에 따라 공사 및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③시공부서의 장은 착공계 승인 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설계도서를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④시공부서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의 검토결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설계자에게 시정·보완 등의 조치를 즉시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감독자 임명) ① 계약담당자는 감독자를 당해 공사에 전문지식과 능력이 있는 자로 임명하거나 시공부서에 위임하여 임명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독자는 공사감독자 및 시험감독자로 분리 임명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감독자를 둘 수 있다. 다만, 건기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 대상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공사 및 시험감독자로 분리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감독자와 보조감독자는 당해공사의 공종별, 부위별 등으로 감독범위, 내용 및 책임한계 등을 명확히 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제41조(감독자의 기본업무) 감독자는 공사계약 관계서류를 숙지하고, 다음 각호의 기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 수행을 위한 계약상대자의 지휘 감독
2. 설계도서 검토, 설계도서와 현지여건과의 부합 여부 확인
3. 설계도서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의 감독, 점검 및 확인
4. 품질보증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5.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당해 목적에 사용하도록 지도·감독
6. 설계변경의 타당성 검토
7.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자재(이하 “도급자재” 라 한다)와 사급자재의 검사·공급 및 관리에 필요한 조치
8. 시공상세도면의 검토·승인
9. 공사에 관련된 문서의 기록 및 보관
10. 기성, 준공, 하자 검사 시 감독자 감독조서 작성
11. 건기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 수행
12. 공사관계자의 제한·통제구역내 출입통제
13. 기타 공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조치

제42조(감독자의 기타업무) 감독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업무외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등의 관리
 - 가. 감독자는 현장대리인 및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자(이하 ‘현장대리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안전수칙 및 공사관련법규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나. 감독자는 제3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현장대리인 등에 대한 경력사항확인서를 검토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현장대리인 등이 계약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 감독자는 제3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현장조직표상의 기술자 확보여부를 매월 점검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가. 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진행 단계별로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의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현장기능공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가' 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서작성기준의 도면서식에 따라야 한다.

3. 안전사고의 예방

가. 감독자는 관련법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매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자체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점검결과와 조치내용을 별지 제31호서식의 공사감독 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공사 목적물의 안전 여부

(2) 당해 공사 시방서에 규정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 여부

(3) 비계, 동바리 등 가설물, 건축물, 건설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의 위험 여부

(4) 기타 당해 공사와 인접된 구조물의 안정성 여부

다. 감독자는 제3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4. 공정관리

가. 감독자는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예정공정표대로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매월 말을 기준하여 공사의 공정을 표기한 월간 시공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시공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자재 및 매장물 관리 등

가. 감독자는 관계규정에 따라 사급자재 및 도급자재에 대하여 반드시 사용 전에 수량, 중량, 품질 등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하며, 도급자재의 검사결과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자재 검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 시공중 포장물 또는 매장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관련자의 입회하에 현장을 보존하고, 목록을 작성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관급자재

감독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 또는 본부가 공급한 관급자재의 수불사항을 제47조의 관급자재수불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자재의 변질방지 등을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7. 하도급 관리

감독자는 관계법규 및 계약조건 등에 의하여 공정한 하도급이 이루어 지도록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법령위반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시공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감독자 시정지시

가. 감독자는 시공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별지 제32호서식의 감독자시정지시서에 따라 시정지시를 한 후 이를 시공부서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지시할 수 있다.

나. 감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자 시정지시 사항이 조치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별지 제33호서식의 감독자 시정 지시사항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시공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공사의 중지 명령

감독자는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공부서의 장과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43조(감독업무 대행) ①감독자는 출장, 휴가 등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시공부서의 장에게 이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②시공부서의 장은 감독자가 출장, 휴가 등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자 또는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 대행하게 하여 감독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업무담당자 임명) 계약담당자는 건기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실시하는 공사의 경우, 제45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업무담당자를 당해 공사에 전문지식과 능력이 있는 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45조(업무담당자 업무) ①업무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수행을 위한 업무 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2. 감리업무수행계획서 및 감리원배치계획서 검토
3. 감리원 지도·관리
4. 준공검사 입회, 준공도서 등의 인수, 하자 발생시 현지조사 및 사후조치
5. 도급자재와 사급자재의 검사·공급 및 관리에 필요한 조치
6. 기성검사의 입회
7. 기타 책임감리용역계약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업무 및 이에 부수되는 사항

②업무담당자는 착공전 감리전문회사로부터 제1항 제2호의 서류와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기술자 경력사항확인서를 제출받아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검토 결과 당

해 공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업무담당자는 공사의 중지 및 착수, 준공기한의 연장 또는 설계변경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관계법규 및 당해공사 책임감리용역계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제46조(업무담당자 업무 대행) 업무담당자는 출장, 휴가 등으로 제45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이를 시공부서의 장에게 이를 즉시 보고해야 하며, 시공부서의 장은 전문지식과 능력이 있는 자로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47조(문서의 기록 및 보관) ① 감독자와 업무담당자는 관련법규 및 이 규정이 정한 문서와 다음 각호의 문서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공사감독(업무담당)일지(별지 제31호 서식)
2. 사급자재수불부(별지 제34호 서식)
3. 도급자재검사부(별지 제35호 서식)
4. 기타 필요한 서류

② 감독자와 업무담당자는 수중, 지하 및 구조물의 내부 등 시공 후 매몰되어 확인이 곤란한 부분과 주요 공중에 대하여는 시공 당시를 상세히 기록하거나 사진을 촬영하는 등 시공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8(손해보험 가입) ① 시공부서의 장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가입대상 공사의 보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계약부서의 장은 손해보험가입 대상공사의 계약상대자에게 공사계약을 체결 한 후 착공 전까지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하며, 손해보험가입증서를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계와 같이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가입 대상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대상 공사
2. 대안입찰, 일괄입찰, 실시설계·시공입찰집행공사
3. 기타 공사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

④ 손해보험가입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49조(품질관리) ① 시공부서의 장은 건기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품질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공부서의 장은 건기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 공종 및 재료를 제16조의 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시공부서의 장은 건기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가 수립한 품질보증계획과 건기법시행령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공사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공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고 있는지를 6월과 12월에 각각 확인하여야 하며, 준공 2개월전 까지한다.

⑤ 시공부서의 장은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기법 제24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원가계산시 반영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당해 목적에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⑥ 시공부서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결과를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품질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50조(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① 시공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에게 제3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감독자(책임감리대상 공사의 경우에는 업무담당자) 및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공사에 제출하게 하고, 공사를 허가·인가·승인을 하여준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공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에게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정한 시기와 횟수에 따라 건설전문안전기관의 정기안전점검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공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결과 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있을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동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공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준공한 때는 건기법시행령 제46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공사에 제출하도록 하고, 동 보고서를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공부서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 안전점검결과, 정밀 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내용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고서를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 존속될 때 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⑥ 시공부서의 장은 안전관리비를 공사원가계산시 반영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를 계약상대자가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공사진척도 및 항목별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안전관리비 사용실적을 기성부분대가 청구시 및 준공계 제출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51조(하도급 관리) ① 시공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로 부터 건기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계약통지를 받은 때와 하도급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국가계약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는 제외)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7일 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고, 심사결과 당해 공사가 적정하게 이행이 되지 아니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 또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도급계약 내용 또는 하도급자를 변경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해당건설업 면허 유무 및 유효 여부
2. 수급한도액
3. 공사실적
4. 당해 하도급공사의 성질 및 이행의 난이도
5. 하도급계약 체결방법
6. 하도급 계약금액의 적정여부

②시공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통지서 또는 하도급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1. 하도급계약서 사본
2. 하도급자 면허수첩 사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증명서, 하도급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하도급자 공사실적, 하도급 부분 공사내역서

③계약부서의 장은 원활한 하도급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6호 서식의 공사하도급관리부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52조(설계변경 및 변경설계도서 작성) ①시공부서의 장은 시공 중 설계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변경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설계도서는 제15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되, 변경사항의 표기는 당초는 흑색으로, 변경은 적색으로 각각 기재하며, 목차 다음에는 설계변경사유서를, 예정공정표 다음에는 공사비 증감대비표를 각각 첨부한다.

제53조(공사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가 중지되어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호의 추가 비용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사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공사현장에 반입된 장비중 공사중지기간 동안 철수가 불가능한 장비의 손료
2. 공사현장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 인원의 인건비와 그 부대비용
3. 공사중지기간 동안 설계내역에 포함된 공종에서 발생한 추가비용. 다만, 공사 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는 비용은 이를 제외한다.
4. 기타 공사에서 공사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4조(시정지시) 시공부서의 장은 건기법 제6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시공을 성실하게 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 우려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시정지시서를 발부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주요공종 종합점검) ①시공부서의 장은 건기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

한 품질시험대상 공사의 주요공종에 대하여는 당해공사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종합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공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점검을 3개월 마다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 한다.

1. 시공된 부분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후속공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의 여부
3. 기타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③점검자가 종합점검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시공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공부서의 장은 종합점검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 즉시 시정 조치 하여야 한다.

제56조(검사) ①계약담당자는 국가계약법 제14조에 따라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 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성부분 검사 : 공사의 준공되기 전 기성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2. 준공검사 : 공사가 준공된 후 공사 전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3. 하자검사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시, 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만료 이전에 하자를 보수한 후 행하는 검사

③시공부서의 장은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 이외에 준공검사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가 부분완성 되었을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7조(검사자 임명) ①검사자는 당해 공사에 전문지식과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기성부분검사와 준공검사(예비준공검사 포함), 하자검사를 각각 임명하며, 해당분야별로 보조 검사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감독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공사의 검사자로 임명될 수 없다.

1.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검사로 감독자 이외의 자가 검사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
2.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 등 당해 계약의 이행 후 지체없이 검사를 하지 아니 하면 그 이행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공사 계약의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자 임명권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상 준공일까지 준공계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하자검사원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8조(검사자의 권한과 책임) ①검사자는 검사에 필요한 공사현장의 확인, 서류의 제출 요구, 감독자 및 관계직원의 입회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감독자 및 관계직원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검사자는 정확하고 공명정대하게 검사하여야 하며 그가 행한 검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9조(검사자의 업무) 검사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관련법규, 계약서,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검사를 하여야 한다.

1. 기성부분 검사

- 가. 기성부분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확인
- 나. 수중, 지하 및 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된 주요부분에대한 시공기록 또는 촬영사진의 확인
- 다. 도급 및 사급자재 검사 실시 여부
- 라. 제49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 품질관리 실시 여부 확인 및 건기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41호서식의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확인
- 마. 제5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점검실시 여부
- 바. 사급자재의 수불 상황
- 사. 기타 기성부분검사에 필요한 사항

2. 준공 검사

- 가. 1호 가목 내지 바목에 관한 사항
- 나. 사급 및 도급자재의 잉여자재 처리의 적정 여부
- 다. 폐자재, 가설물 등 현장 정리정돈 상태
- 라. 예비준공검사 시 지적된 사항의 시정여부
- 마. 기타 준공검사에 필요한 사항

3. 하자검사

- 가.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이거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시 준공설계도서에 따라 계약목적물 전반에 걸쳐 하자발생 유무 확인
- 나. 하자보수 공사 완료시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관한사항
- 다. 기타 하자검사에 필요한 사항

제60조(기성부분 검사) ①시공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기성부분대가를 청구 할 경우 별지 제38호서식의 기성부분검사원을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임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자를 임명하여 기성부분 검사를하게 하여야 한다.

- 1. 기성부분 내역서
- 2. 기성부분 사진첩
- 3. 사급자재 수불부(별지 제34호 서식)
- 4. 도급자재 검사부(별지 제35호 서식)
- 5. 감독자(책임감리대상공사의 경우 업무담당자)기성부분 감독조서 (별지 제39호 서식)
- 6. 감리자 기성부분 감리조서(별지 제40호 서식)

7. 품질시험성과 총괄표(별지 제41호 서식)

②시공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검사원을 제출받은 때에는 감독자(업무담당자) 및 감리자에게 별지 제39호 및 제40호서식의 감독자(업무담당자) 기성부분 감독조서 및 감리자 기성부분 감리조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 및 계약부서의 장과 검사자에게 각각 송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검사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후 별지 제42호서식의 기성부분 검사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임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1. 기성부분 내역서
2. 기성부분 사진첩
3. 사급자재 수불부(별지 제34호 서식)
4. 도급자재 검사부(별지 제35호 서식)
5. 감독자(책임감리대상공사의 경우 업무담당자)기성부분 감독조서(별지 제39호 서식)
6. 감리자 기성부분 감리조서(별지 제40호 서식)
7. 품질시험성과 총괄표(별지 제41호 서식)

④ 계약부서의 장은 검사자로 부터 통보받은 기성검사 결과를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1조(약식 기성부분 검사조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 가지급시의 기성검사(약식기성부분검사)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자(업무담당자) 기성부분감독조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62조(예비준공검사 실시) ①시공부서의 장은 건기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공사에 대하여 준공예정일(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최종 준공예정일) 1개월 전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자를 임명하여 예비준공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준공검사는 제59조 제1호 각목 및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을 준용하여 실시하되 공정진도 및 준공기한내 완성 가능성, 문제점 및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3조(준공검사) ①시공부서의 장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별지 제43호 서식의 준공계를 제2항의 준공명세서를 붙임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자를 임명하여 준공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명세서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에 따른 자료
2. 건기법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자료
3. 기타 계약관계서류에 따른 다음 각목의 서류 각1부
 - 가. 준공내역서
 - 나. 준공사진첩

- 다. 준공설계도서
- 라. 시설물 작동지침서
- 마. 시설물 유지·관리·보수에 관한 지침서
- 바. 공사시공기록 책자 각각 5부.
- 사.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제5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함)
- 아. 안전관리비 사용실적(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함)
- 자. 사급자재 수불부(별지 제34호서식)
- 차. 도급자재 검사부(별지 제35호서식)
- 카. 사급 및 도급자재의 잉여자재 처리현황
- 타. 감독자(업무담당자)준공 감독조서(별지 제44호서식)
- 파. 감리자 준공 감리조서(별지 제45호서식) 각 1부.

③시공부서의 장은 규정에 의한 제1항의 준공계를 제출받은 때에는 감독자(업무담당자)및 감리자에게 별지 제44호 및 제45호서식의 감독자(업무담당자)의 준공감독조서 및 감리자 준공 감리조서를 각각 작성하여 계약상대자, 계약부서의 장과 검사자에게 송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검사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후 별지 제46호서식의 준공 검사조서에 제2항 각호의 서류를 붙임하여 계약부서의 장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계약부서의 장은 검사자로 부터 통보받은 준공검사 결과를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4조(하자검사) ①계약부서의 장은 매년도 초 당해년도에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이거나 기간이 만료되는 계약목적물을 시설물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관리부서의 장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한 검사자로 하여금 하자담보 책임기간중인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6개월에 1회 이상 하자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③검사자는 제59조 제3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검사를 한 후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하자검사조서를,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하자발생보고서를 즉시 시설물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설물관리부서의 장은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하자발생 원인이 계약상대자에게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공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공사를 할 때에는 제40조내지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자보수공사 감독자를 임명, 하자보수공사 감독을 하게 한 후 별지 제49호 서식의 감독자 하자보수공사 감독조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 계약부서의 장 및 검사자에게 이를 각각 송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시설물관리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공사를 마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아래 각호의 서류를 붙임하여 별지 제50호서식의 하

자보수공사 검사원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하자보수공사 내역서
2. 하자보수공사 사진첩
3. 도급자재 검사부(별지 제35호서식)
4. 품질시험성과 총괄표(별지 제41호서식)
5. 감독자 하자보수공사 감독조서(별지 제49호서식)

⑥시설물관리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공사 검사원을 제출한 때에는 제2항의 검사자에게 이를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자는 제59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공사 검사를 한 후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붙임하여 별지 제51호서식의 하자보수공사 검사조서를 시설물관리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시설물관리부서의 장은 계약목적물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별지 제52호서식의 하자담보책임기간만료 검사원을 제출하게 한 후 검사자를 임명하여 이를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자는 제59조 제3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만료 검사를 한 후 별지 제53호서식의 하자담보책임기간만료 검사조서를 시설물관리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⑩계약부서의 장은 검사자로부터 제7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를 통보 받은 때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⑪계약부서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검사 결과와 제4항의 하자발생·보수 현황을 별지 제54호서식의 하자검사관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65조(부실측정) ①시공부서의 장은 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건기법 제2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부실별점을 줄 수 있다.

② 부실측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사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66조(시공평가) ① 시공부서의 장은 건설업자의 기술수준 향상과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공사가 90%이상 진척되었을 때에 건기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공평가 대상은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 50억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억원미만인 공사에 대하여도 시공평가를 할 수 있다.

③시공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그 결과의 활용에 대하여는 사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67조(공사표지판의 설치) ① 시공부서의 장은 건기법 제4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착공후 공사현장에 별지 제55호서식의 건설공사의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공부서의 장은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건기법 제43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재 또는 금속재의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준공표지판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사명 · 공사기간
2. 발주자(한국조폐공사 또는 한국조폐공사 00본부)
3. 계약상대자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4. 설계자(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기재)
5. 감리자(감리전문회사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기재)
6. 공사감독자(전면책임감리대상공사가 아닌 공사의 경우)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과 기술자격종목 및 등급
8. 준공검사자

③ 시공부서의 장은 공사원가계산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표지판 및 준공표지판의 설치비용을 계상 하여야 한다.

제68조(정밀안전진단) ① 시설물관리부서의 장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 6개월 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다음 각호의 주요부분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보수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 등에 불구하고 하자가 보수될 때 까지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연장조치 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 구조부 또는 철골 구조부
2. 건축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 구조부
3. 조립식 건축물의 연결 부위

③ 시설물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후 정밀안전진단 결과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부분을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서 정한 규격에 미달되게 시공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킬 구조안전상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설물관리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를 요청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수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1. 보수설계도서
2. 보수주체

3. 보수기간

4. 기타 보수에 필요한 사항

⑤ 시공부서의 장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이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리주체 및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

2. 준공내역서 및 공사시방서

3. 구조 및 수리계산서

4. 시공중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와 조치결과

5. 공사 시공기록 책자

6. 설계도서 수록 컴퓨터용 CD-ROM

7. 기타 필요한 자료

⑥ 정밀안전진단 절차 및 방법 등은 사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3장 용역계약

제1절 입찰공고 등

제69조(과업지시서 작성) 시공부서의 장은 설계 등의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과업의 범위 및 내용

2. 과업추진계획 및 실적보고 등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3. 과업수행기술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과업수행 및 각종 성과물의 보안에 관한 사항

5. 과업수행과 관련한 지시, 통보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

6. 용역수행에 필요한 관계기관 또는 이해관계인과의 협의등에 관한 사항

7. 각종 인·허가 사항

8. 적용기술, 기준 및 규격

9. 자료수집, 현지조사, 보상조사 등의 조사범위 및 방법

10. 중간 및 최종성과품 제출에 관한 사항

제70조(입찰 및 계약서류) 시공부서의 장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과업지시서

2. 용역원가계산서

3. 용역계약특수조건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심의결과 사본
5. 건기법 제21조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사업 수행능력 평가기준
6.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있어서는 기술입찰서 평가기준 및 절차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서류

제71조(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작성) ①시공부서의 장은 계약체결을 요청하고자 하는 용역이 건기법 제21조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일 경우에는 건기법시행규칙 제13조 및 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자 선정평가기준, 책임감리전문회사 선정 평가기준, 공공건축공사 설계자선정 평가기준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이하 “평가기준”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평가기준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72조(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작성) ①계약부서의 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 중 적격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 이라 한다)을 작성 하여야 한다.

②계약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 중 일부 항목의 심사를 시공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시공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요청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세부기준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2절 계약체결

제73조(계약서의 작성) ①계약부서의 장은 낙찰자결정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임하여 별지 제56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1. 용역입찰유의서
2. 용역계약일반조건
3.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4. 감리용역계약특수조건
5.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용역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를 포함)
6.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

②계약부서의 장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당해용역 신고·등록수첩사본 또는 자격증명서류
3.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4.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납부각서(별지 제22호 서식)
5.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수입인지

③계약부서의 장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경우 연대보증인으로 부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한다.

④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경우에는 사본에 “원본과 같음” 을 명기하고 신고된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절 용역관리

제74조(용역의 착수) ①시공부서의 장은 용역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용역을 착수하게 하고 별지 제57호서식의 착수계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착수계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전체용역 및 당해연도 용역의 세부용역계획서
2. 현장대리인계(별지 제58호 서식)
3. 현장조직표(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참여기간 포함)
4.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가입증서
5. 물가상승 지수산출을 위한 비목내역서(적산관리시스템용 전산 디스켓)

제75조(감독자 임명) 계약담당자는 감독자를 당해 부분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임명하거나 시공부서의 장에게 위임하여 임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6조(감독자의 업무) ①감독자는 관련법규, 계약서, 시방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및 기타 계약관계서류를 숙지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을 위한 계약상대자의 지휘·감독
2. 용역수행방법 지도
3. 용역수행 계획 및 성과의 적정성 검토
4. 공정진도의 확인
5. 용역성과 및 자료의 보안유지에 관한 지도·감독
6. 관계기관 또는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및 지원

7.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의 지원

8. 기타 용역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감독자는 용역성과품중 최종보고서에 용역에 참여한 기술자별 업무내용을 계약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재하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면 하단에는 전문분야별 책임 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감독자는 관련법규 및 이 지침에서 정하는 규정과 별지 제59호 서식의 용역감독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77조(시정지시 등) 시공부서의 장은 건기법 제6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용역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시정지시서를 발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8조(사전협의 등) ①시공부서의 장은 건설공사가 원활히 수행 될 수 있도록 용역 수행중에 미리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시공부서의 장은 용역 과업 수행중에 국토건설종합계획,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등과의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79조(하도급 관리) 시공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하도급계약서 사본 및 하도급 용역수행계획서 제출
2. 하도급업체의 용역수행 자격요건 구비 여부 확인
3. 기타 하도급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0조(검사자의 업무) 검사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관계법규, 계약서,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과업지시서와의 부합여부
2. 수집한 자료 및 제출한 성과품의 충실도
3. 기타 검사에 필요한 사항

제81조(설계자문) 시공부서의 장은 보상비를 제외한 추정 총공사비가 200억원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용역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의 설계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보상비를 제외한 추정 총공사비가 200억원미만인 경우의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도 설계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82조(부실추정) ①시공부서의 장은 설계감리 등의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건기법 제21조

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부실별점을 줄 수 있다.

②부실측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사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83조(용역평가) ①시공부서의 장은 설계 등 용역이 완료된 때에 건기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건설기술용역평가 및 부실측정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는 사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84조(설계감리) ①시공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설계 등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감리를 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1종 시설물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의하여 시공되거나 주요 구조물이 조합되는 공사로서 용역계약부서의 장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②설계감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85조(설계등 용역업자의 손해배상보증) ①계약부서의 장은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건기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 등 용역업자가 이를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부서의 장은 감리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한 경우에는 건기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회사가 이를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계약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담보를 위해 설계 등 용역업자와 감리회사에게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가입보증서를 용역착수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설계 및 감리용역업자의 손해보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86조(공사계약에관한 세부기준의 준용) 제18조 내지 제20조, 제22조 내지 제30조, 제35조 내지 제36조, 제38조, 제43조, 제56조 내지 제58조, 제60조 내지 제61조, 제64조는 용역계약에 이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5년 10월 일부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부기준은 2017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예정가격조서

건(용역)명 :

구	분	금	액	비	고
순공사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				
	소계				
일반관리비					
이윤					
합계					
주요자재비					
공사원가					
부가가치세					
총계					

위와 같이 예정가격 작성을 위하여 금액을 산출함.

붙임 : 공사원가계산서 1부

20

작성자 : (인)

확인자 : (인)

예정가격조서

－ 용역명 :

구 분	금 액	산 출 근 거	비 고
1. 인건비			
2. 재료비			
3. 경비			
4. 안전관리비			
5. 산재보험료			
6. 일반관리비			
7. 이윤			
8. 부가가치세			
총 계			

위와 같이 예정가격 작성을 위하여 금액을 산출 함.

붙임 : 용역비산출내역서 1부. 끝.

20 . . .

작성자 : (인)

확인자 : (인)

예 정 가 격 결 정 서

一 金

원정

건 명	규 모	금 액
	1식	₩

※ 기초금액()에서 (2%) 상당금액을(증·감)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함.

20 . . .

작성자 :

(인)

복 수 예 비 가 격

一 金

원정

공 사 (용 역) 명	규 모	금 액
수표통합 번호관리		

※ 기초금액()에서 (%) 상당금액을(증·감)하여 위와같이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함.

20

작성자 : (인)

구 분	업 체 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날 인	비 고
추 첨 인					
입 회 인					

확정예정가격

- 공사(용역)명 :

추첨 가격(1)	추첨 가격(2)	추첨 가격(3)	추첨 가격(4)	확정예정가격 {(1)+(2)+(3)+(4)} ÷4

200 . . .

집행자 : (인)

입회자 : (인)

입회자 : (인)

복수예비가격 내역

1	2	3	4	5
6	7	8	9	10

수의계약 예정가격

一 金

원정

공 사 (용 역) 명	규 모	금 액
	식	₩

※ 기초금액(₩000,000,000-)에서 (2%) 상당금액을(증·감)하여 위와같이 수의 계약예정가격을 작성함.

2000. 0. 0.

00000 직 급

(인)

입찰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협 상 일 자	2010. 1. 6.
	입 건 명			
	금 액	일금 (₩ -) ※부가가치세 포함		
	계 약 기 간			
입찰자	상 호		법인 등록 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 등록 번호	

본인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한 제지 자동 포장 시스템 1식 제작 구입설치를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규격서(제안서)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기한내에 제작·설치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협상)를 제출합니다.

200

입찰자 (인)

한국조폐공사장 귀하

입찰조서

- 1. 공사(용역)명 :
- 2. 입찰일시 :
- 3. 예정가격 :
- 4. 입찰보증금 :
- 5. 입찰내역

업체명	대표자	제 1 차	제 2 차	제 3 차	비고

- 입찰집행자 : (인)
- 입 회 자 : (인)

수 의 견 적 조 서

1. 건 명 :

2. 견적서 제출일시 : 2000. 0. 0. 00:00

3. 예정가격 :

4. 견적내역

업 체 명	대 표 자	제 1 차	제 2 차	제 3 차	비 고

- 집행자 : (인)

- 입회자 : (인)

계약보증금 납부각서

1. 계약명 :
2. 계약금액 :
3. 계약보증금 :
4. 계약체결일 :
5. 준공기한 :

본인은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5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았으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상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귀 공사의 지시에 따라 위 계약보증금을 위약금으로 납부할 것을 약속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주 소 :
업 체 명 :
대표자명 :

한국조폐공사장 귀하

계 약 변 경 동 의 서

1. 계 약 명 :
2. 현 장 :
3. 계약금액변경
 - 당초 : ₩
 - 변경 : ₩
 - 증감 : ₩
4. 계약기간 변경
 - 당초 :
 - 변경 :

본인은 위 공사 계약상대자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위와 같이 계약을 변경 하는것에 동의하며, 변경 및 변경전 계약서의 모든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 합니다.

20 . . .

- 주 소 :
- 업체명 :
- 대표자 : (인)

한국조폐공사장 귀하

착 공 계

1. 공사명 :
2.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
4. 착공일자 :
5. 준공일자 :

아래서류를 붙임 하여 착공계를 제출합니다.

- 붙임 : 1. 전체공사 및 당해연도 공사의 세부공정계획서
2. 현장대리인계
 3. 현장조직표
 4. 품질보증계획서 및 품질시험계획서(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5. 안전관리계획서
 6. 손해보험가입증서
 7. 환경오염방지계획서
 8. 물가상승 지수산출을 위한 비목내역서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한국조폐공사(00본부)장 귀하

현 장 대 리 인 계

1. 공 사 명 :

2. 계약일자 :

위공사의 현장대리인을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기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기술자격명칭		기술자격번호	
사 용 인 감		기 타 사 항	

붙임 : 1. 기술자격증 사본

2. 경력사항 확인서 각 부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한국조폐공사(00본부)장 귀하

건설기술자경력사항확인서										
코드번호										
성명 (한자)							주민등록 번호			
주소										
기술자격종목					자격번호					
학 력	학교명		학과명		졸업년도		학위			
보수교육이수										
교육과정명		교육기관		교육기간		수료증번호				
상별사항										
종류	기관명		일자	사유		비고				

주요 경력 사항					
근무기간	근무처명	공사현황	발주처	담당공사분야	비고 (특기사항)
	직위		사업명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사항을 확인함

건설기술자관리 대행기관의 장 (인)

안 전 관 리 자 선 임 계

1. 공 사 명 :

2. 계약일자 :

위공사의 안전관리자를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기 안전관리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기술자격명칭		기술자격번호	
사 용 인 감		기 타 사 항	

붙임 : 1. 기술자격증 사본

2. 경력사항 확인서 각 부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한국조폐공사(00본부)장 귀하

공사 참여자 서약서

1. 계약명 :

2. 계약기간 :

본인은 위 공사(용역)를(을)수행하면서 지득한 비밀을 공사(용역)기간중 에는 물론 끝난 후에도 외부로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0 . .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대표자 보안각서

1. 계약명 :

2. 계약기간 :

본인은 위 공사(용역)를(을) 수행하면서 지득한 비밀을 공사(용역)기간중 에는 물론 끝난 후에도 외부로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 하며, 공사(용역)참여자의 서약서를 붙임하여 각서를 제출 합니다.

붙임 : 공사(용역)참여자 서약서

200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조폐공사장 귀하

【별지 제31호 서식】(제42조 제3호 관련)

<u>공사감독일지</u>					담 당	팀 장
공사명 :						
20 . . . ()요일				공사진도율		
천 후	맑음_흐림 비 눈	기 온	최저 °C 최고 °C	예정 진도율	실시 진도율	
				%	%	
주요업무 :						
공종별	작업내용					
공사명령 및 지시사항						
기타 특정사항						
비고						

공사감독자

(인)

감독자 시정지시서

1. 공사명 :
2. 시정조치 하여야 할 사항 :

위와 같이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통보하니 . . . 까지 시정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0공사 감독자 (인)

현장대리인 귀하

감독자 시정지시사항 조치결과

1. 공사명 :
2. 감독자 시정지시사항 :
3. 조치결과 :

감독자 시정지시사항을 위와 같이 조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 · ·
OO공사 현장대리인 (인)

공사감독자 귀하

시 정 지 시 서

1. 귀사에서 시공중인 0 0공사(. . . 계약체결)는 귀사가 성실하게 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아래와 같이 부실공사 우려가 있습니다.

가 불성실 시공 사례

-
-
-

나. 부실공사 내역

-
-
-

2. 이에 우리 공사는 귀사의 위와같은 불성실 시공을 즉시 중지할 것과 부실공사는 . . . 까지 시정할 것을 지시하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위 기일내 시정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건기법 시행규칙 제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교통건설부장관에게 이 결과를 제출할 예정임을 통보합니다.

한국조폐공사(0 0본부)장 (인)

계약상대자 귀하

기성부분 검사원(제 회)

1. 공 사 명 :
2. 계약 금액 :
3. 계약연월일 :
4. 착공연월일 :
5. 준공 기한 : .
6. 공 정 율 : . . . 현재 %

본인은 위 공사의 기성부분을 계약서, 설계도서 대로 어김없이 시공하였기, 아래서류를 붙임하여 기성부분검사원을 제출하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기성부분 내역서
 2. 기성부분 사진첩
 3. 감독자 기성부분 감독조서(별지 제39호)
 4. 감리자 기성부분 감리조서(별지 제40호)

주 소 :

업 체 명 :

대표자명 :

한국조폐공사장 귀하

감독자(업무담당자)기성부분 감독조서(제 회)

- 공 사 명 :

위 공사의 감독자(업무담당자)로 임명받아 2000. . .부터 2000. . . 까지 기성부분을 감독한 결과 계약서, 설계도서 대로 어김없이 시공하였음을 확인하며, 아울러 전공정의 %가 시공 되었음을 인정함.

20

공사감독자(업무담당자) (인)

(인)

계약상대자, 계약부서의 장 및 검사자 귀하

감리자 기성부분 감리조서(제 회)

- 공 사 명 :

위 공사의 감리자로 20 . . . 부터 20 . . . 까지 기성부분을 감리한 결과 계약서, 설계도서 대로 어김없이 시공하였음을 확인하며, 아울러 전공정의 %가 시공되었음을 인정함.

20

주 소 :

업 체 명 :

대표자명 : (인)

계약상대자, 한국조폐공사장 및 검사자 귀하

【별지 제41호 서식】 (제60조 제1항 관련)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선정, 관리시험)

공사명 :

공사기간 :

공 종	시험종류(재료)	시 험 회 수					비 고
		계 획	실 시	합 격	불합격	재시험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조폐공사장 귀하

기성부분 검사조서

공 사 명 :

위 공사의 기성부분검사자로 임명받아 20 . 0. 0.부터 20 . 0. 0. 까지
기성부분을 검사한 결과 계약서, 설계도서 대로 어김없이 시공하였음을 확인하였
으며, 전 공정의 %가 기성되었음을 인정합니다.

단, 수중지하 및 구조물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후 매몰된 부분의 검사는 공
사감독자와 감리자의 감독 및 감리조서에 따름.

- 붙 임 : 1. 기성부분 내역서
2. 기성부분 사진첩
3. 감독자(책임감리대상공사의 경우 업무담당자, 이하 같다)기성부분 감
독조서(별지 제39호)
4. 감리자 기성부분 감리조서(별지 제40호)

20 . . .

기성부분 검사자 : (인)

(인)

준 공 계

경 유 : (인)

1. 공 사 명 :
2. 계약 금액 :
3. 계약연월일 :
4. 착공연월일 :
5. 준공 기한 :
6. 준 공 일 :

위 공사를 계약서, 설계도서 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여 준공계를 제출하러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침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명세서

20

주 소 :

업 체 명 :

대표자명 : (인)

한국조폐공사장 귀하

감독자(업무담당자) 감독조서

1. 공 사 명 :
2. 계약일자 : 20 . 0. 0.
3. 공사기한 : 20 . 0. 0.

위 공사의 감독자(업무담당자)로 임명받아 2000. . .부터 2000. . . 까지 공사 과정을 감독한 결과 계약서, 설계도서대로 어김없이 이행 하였음을 인정합니다.

20 . 0. 0.

공사 감독자

(인)

계약상대자, 계약부서의 장 및 검사자 귀하

감리자 준공 감리조서

1. 공 사 명 :
2. 계약일자 :
3. 준공기한 :

위 공사의 감리자로 . . .부터 . . .까지 시공과정을 감리한 결과 계약서, 설계도서 대로 어김없이 시공하였음을 인정합니다.

.

주 소 :
업 체 명 :
대표자명 :

계약상대자, 한국조폐공사(00본부)장 및 검사자 귀하

검 사 조 서

1. 공 사 명 :
2. 계약일자 : 20 . 0. .
3. 공사기한 : 20 . 0. .

위 용역의 검사자로 임명받아 20 . 0. 0.부터 20 . 0. 0.까지 검사한
결과 계약서, 과업지시서대로 어김없이 이행 하였음을 인정합니다.

붙임 :

20 . 0. 0.

공사 검사자 (인)

하 자 검 사 조 서

1. 공사명 :
2. 계약 연월일
3. 준공 연월일 : .
4. 하자담보 책임기간 :

위 공사의 하자 검사자로 임명받아 . . .부터 . . . 까지 하자 발생여부를 확인한 결과,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하자 검사자 (인)

하 자 발 생 보 고 서

1. 공사명 :
2. 계약 연월일
3. 준공 연월일 :
4. 하자보수보증금 :
5. 하자담보 책임기간 :

위 공사의 하자 검사자로 임명받아 . . .부터 . . . 까지 하자 발생여부를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이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아 래

1. 하자발생 공종 및 내용 :
2. 하자 발생일 :
3. 하자보수 예상액 :
4. 하자보수 소요기간 :
5. 하자발생 원인 :

붙임 : 하자발생 사진첩

. . .

하자 검사자 0 0 0 (인)

감독자 하자보수공사 감독조서

1. 공 사 명 :
2. 하자담보책임기간 :

위 하자보수공사의 감독자로 임명받아 . . .부터 . . .까지 감독한 결과 계약서, 준공설계도서 대로 어김없이 하자보수공사를 하였음을 인정합니다.

하자보수공사 감독자 (인)

계약상대자, 계약부서의 장 및 검사자 귀하

하자보수공사 검사원

1. 공사명 :
2. 계약 연월일 :
3. 준공 연월일 :
4. 하자담보 책임기간 :
5. 하자보수공사 금액 :
6. 하자보수공사 완료일 :

위 공사의 하자보수공사를 계약서, 설계도서 대로 어김없이 시공하였기, 아래 서류를 붙임하여 하자보수공사 검사원을 제출하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하자보수공사 내역서
2. 하자보수공사 사진첩
3. 도급자재 검사부(별지 제35호)
4. 품질시험성과 총괄표(별지 제41호)
5. 감독자 하자보수공사 감독조서(별지 제47호)

주 소 :

업 체 명 :

대표자명 :

한국조폐공사(00본부)장 귀하

하자보수공사 검사조서

1. 공 사 명 :
2. 하자보수 착공일 :
3. 하자보수공사 완료일 :

위 공사의 하자보수공사 검사자로 임명받아 . . . 부터 . . . 까지
검사한 결과 계약서, 준공설계도서 대로 어김없이 완료하였음을 인정합니다.
'단, 수중지하 및 구조물 내부 또는 저부등 시공후 매몰된 부분의 검사는 하자
보수공사 감독자의 감독조서에 따름.

- 붙 임 : 1. 하자보수공사 내역서
2. 하자보수공사 사진첩
3. 도급자재 검사부(별지 제35호)
4. 품질시험성과 총괄표(별지 제41호)
5. 감독자 하자보수공사 감독조서(별지 제49호)

. . .

하자보수공사 검사자 0 0 0 (인)

하자담보책임기간만료 검사원

1. 공사명 :
2. 계약 연월일 :
3. 준공 연월일 :
4. 하자담보 책임기간 :

위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위와 같이 만료되었기 하자담보책임기간만료 검사원을 제출하니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하자검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업 체 명 :
대표자명 :

한국조폐공사(00본부)장 귀하

하자담보 책임기간만료 검사조서

1. 공사명 :
2. 계약 연월일
3. 준공 연월일 : .
4. 하자담보 책임기간 :

위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만료 검사자로 임명받아 . . .부터 . . . 까지
검사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 붙 임 : 1. 하자검사 결과
2. 하자검사 사진첩
3. 하자검사 관리부(별지 제54호)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검사자 0 0 0 (인)

건 설 공 사 현 황

공 사 명	
발 주 자	
설 계 자	
시 공 자	
감 리 자	
현장관리건설기술자	
공 사 비	
착 공 연 월 일	
준 공 예 정 연 월 일	

(뒷면)

용역내역서		
용역명	규격, 단위 또는 세부 사항	금액

【별지 제57호 서식】(제76조 제1항 관련)

착 수 계

1. 용역명 :
2.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
4. 착수일자 :
5. 완료일자 :

아래서류를 붙임하여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 붙 임 : 1. 전체용역 및 당해연도 용역의 세부용역계획서
2. 현장대리인계(별지 제58호 서식)
3. 현장조직표(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참여기간 포함)
4. 제48조 제2항의 손해배상 손해배상 보증서
5. 물가상승 지수산출을 위한 비목내역서(적산관리시스템용 전산디스켓)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한국조폐공사(00본부)장 귀하

【별지 제58호 서식】(제76조 제2항 제2호 관련)

현 장 대 리 인 계

1. 용역명 :

2. 계약일자 :

위 용역의 현장대리인을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기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기술자격명칭		기술자격번호	
사 용 인 감		기 타 사 항	

붙 임 : 1. 기술자격증 사본 1부

2. 경력사항 확인서 각1부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한국조폐공사(00본부)장 귀하

【별지 제59호 서식】(제76조 제3항 관련)

용역감독일지

- 용역명 :

. . . () 요일				용역 진도율	
날씨		기온	- 최고 :	예정 진도율	실제 진도율
			- 최저 :	%	%
1. 용역수행 내용					
2. 감독업무 수행내용					
3. 기타 특기사항					

【별지 제60호 서식】 (제77조 관련)

시 정 지 시 서

1. 귀사에서 수행중인 0 0용역(. . . 계약체결)은 귀사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아래와 같이 부실공사 우려가 있습니다.

가. 불성실 업무 수행 부분

.
. .

나. 부실공사 우려 내역

.
. .

2. 이에 우리 공사는 귀사의 위와같은 불성실 업무수행을 중지할 것과, 부실업무수행 부분을 . . .까지 시정할 것을 지시하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위 기일내 시정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 결과를 제출할 예정임을 통보합니다.

. . .

한국조폐공사(0 0본부)장

(인)

계약상대자 귀하